

# 2019년도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0. 25.(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전용준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5건(안건번호 제2019-138109호~13820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8년과 2019년에 공개된 국내외 영상저작물에 관한 사안들로서,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엑시트(2018), 영화 양자물리학(2019),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2019), 영화 앵그리 버드2: 독수리 왕국의 침공(2019), 영화 알라딘(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위원 :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으며,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7.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